

등록번호	사회복지과-41503
등록일자	2015. 12. 28.
결재일자	2015. 12. 28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장애인복지팀장	사회복지과장	복지문화국장
이주은	김찬종	김성기	12/28 오제성
협 조			

## 2016년 장애인·가족 재활치료 지원사업 계획



서대문구  
사회복지과

# 2016년 장애인·가족 재활치료 지원 사업 계획

장애인과 그 가족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가족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고자 함

## I 추진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17조(장애발생 예방) 및 제18조(의료와 재활치료)

## II 추진현황
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주거·의료급여) 중 재활치료 대상 장애인 현황

(2015. 12. 28. 기준)

계	장애유형					
	뇌병변	지적	자폐성	청각	언어	시각
601	160	194	2	110	19	116

- 2015년 서비스 지원 현황

(2015. 12. 28. 기준)

구분	계		서대문장애인 종합복지관		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	
	이용자(명)	금액(천원)	이용자(명)	금액(천원)	이용자(명)	금액(천원)
연간	25	15,630	15	9,000	10	6,630

### III | 추진 개요

- 지원기간 : 2016. 1월 ~ 12월
- 지원대상 : 관내 장애인 및 그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(생계주거의료급여) 세대에 속하는 자
- 지원내용 : 언어, 청능, 미술, 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·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
- 제공기관 :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,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
- 소요예산 : 9,500천원(구비 100%)

### IV | 세부추진계획

- 지원기간 : 2016. 1월 ~ 12월
- 지원대상 : 관내 장애인 및 그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(생계주거의료급여) 세대에 속하는 자
  - 다만, 영유아(만6세 미만)의 경우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(전문의사 육안검사만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)
  - 이미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사업(바우처)을 받고 있는 경우, 발달재활 서비스사업(바우처)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횟수를 모두 이용하였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(장애등급의 증중 여부, 담당 재활치료사 및 사회복지사의 의견 검토)
- 지원내용 : 언어, 청능, 미술, 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치료 등 재활치료 지원
  - 1인당 월 4회이내에서 1~2개 프로그램 지원
    - 예) 음악치료 4회 또는 음악치료 2회 + 미술치료 2회
  - 아동, 부모가 모두 치료대상일 경우 각각 월 4회씩 지원가능

○ 지원액 : 1회 치료비 30,000원 중 25,000원 지원

계	구 부담	서비스제공기관 부담	본인부담
30,000원	25,000원	5,000원	없음

○ 추진방법 :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, 협약체결후 추진

- 지정서(안) 및 협약서(안) 별첨

○ 제공기관 지정방법

- 2015년 서비스 제공기관 중 사업희망여부 조사(15.12.21. ~ 15.12.31.)

- 사업희망 기관 및 서비스 내용

기관명	소재지(연락처)	사업인원	서비스 단가	제공 서비스
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	북아현동 129-37 ☎3140-3036	23	30,000원	언어, 미술, 음악, 인지교육, 감각통합 등
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	남가좌동 270-1 ☎ 3156-6660	10	30,000원	언어, 미술, 음악 치료

○ 사업예산 : 9,500천원

- 산출내역 : 100,000원(월4회)× 7명 × 12월 (※ 예산 내에서 인원 수는 탄력적 운영)

- 예산과목 : 장애인 재활자립기반 확충, 장애인 자립생활 및 가족지원,  
장애인 및 가족 재활치료 지원, 민간이전, 민간경상보조

○ 사업 프로세스



■ 제공기관

- 사업 홍보 및 이용자 모집 : 장애인 단체 등과 연계 자율 추진

- 서비스 이용자와 합의하에 계약 체결 및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,

- 서비스 제공, 평가 모니터링 :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지침 준용

-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, 인건비 지급 등 노무관리 :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지침 준용
- 사업실적 보고 및 사업비청구 : 익월 5일까지 비용청구
- 매월 서비스 관리, 평가 및 모니터링 : 익월 10일까지 사회복지과 제출

■ 서대문구청

- 사업 홍보 : 구 소식지(서대문마당)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
- 사업비 예산 지급 : 익월 5일까지 청구 받아 10일까지 지급

V

전년도 대비 주요 변동 사항

구 분	2015년	2016년												
지원대상	관내 장애인 및 그 가족 (소득수준 무관, 아동 우선 선발)	관내 장애인 및 그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(생계·주거의료급여) 세대에 속하는 자 (※ 연령 무관)												
지원인원	25명	7명												
지원내용	언어, 청능, 미술, 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치료 등의 재활치료 지원													
제공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서대문종합장애인복지관</li> <li>•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</li> </ul>													
지원액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 부담</td> <td>15,000원</td> </tr> <tr> <td>서비스제공기관</td> <td>5,000원</td> </tr> <tr> <td>본인부담</td> <td>10,000원</td> </tr> </table>	구 부담	15,000원	서비스제공기관	5,000원	본인부담	10,000원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 부담</td> <td>25,000원</td> </tr> <tr> <td>서비스제공기관</td> <td>5,000원</td> </tr> <tr> <td>본인부담</td> <td>없음</td> </tr> </table>	구 부담	25,000원	서비스제공기관	5,000원	본인부담	없음
구 부담	15,000원													
서비스제공기관	5,000원													
본인부담	10,000원													
구 부담	25,000원													
서비스제공기관	5,000원													
본인부담	없음													

- 지정서 발급 및 협약 체결 : 2016. 1. 4일까지
- 사업 계획서 제출 : 서비스 제공기관, 2015. 1. 5일까지
- 사업 실시 홍보 :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동 주민센터·장애인복지관·복지시설 등에  
홍보 요청

붙임 : 1. 제공기관 지정서(안).  
2. 협약서(안). 끝.